



# 거주자간 해외직접투자 양수도 신고 관련 유의사항

1. 사전(양수도계약 체결 후 대금을 결제하지 않은 상태)에 신고절차를 완료해야 함
2. 양도자와 양수자가 양도자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함께 신청하여야 하며 신고 후 당해 사업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양수자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앞으로 이관해야 함(부분 양수도하는 경우에는 사본 송부)
3. 양수인은 자신의 거래외국환은행에 신고필증 등을 제출하고 적정 사후관리를 이행하여야 함
4. 투자금액과 양도가액이 상이한 경우 차액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함
5. 비거주자에의 전액지분 매각은 규정 제9- 6조(해외직접투자사업의 청산)에 따름
6. 전액 양수도하는 경우에는 대부채권도 함께 양수도해야 함
7. 양수도 당사자가 해외직접투자 양수도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형사벌칙 또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

## ※ 주요항목 기재 요령

- 신고일자 및 신고번호 : 해외직접투자 관련 신고 건이 다수인 경우 최초의 신고일자 및 신고번호 기재
- 투자지분 양도내역 : 계약서 상 표시된 양도금액과 지분율을 정확히 기재
- 양수도내역 : 계약서 상의 실제 양수도일자(잔금일자/대금결제일자) 및 양수도가액 기재
- 양수도하는 총투자금액(지분투자금액+대부투자금액)이 양수도가액과 상이한 경우에는 차액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함

